C - 80 - 2013

# 강아치교(벤트공법) 안전보건작업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교량형식 중 주형을 곡선 또는 포물선으로 형성하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력을 받도록 한 강아치교 시공에 있어 안전한 작업방법 및 떨어짐, 부딪 힘, 무너짐,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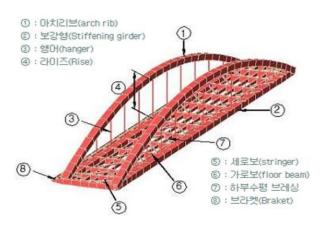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강아치교 상부구조를 가설벤트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는 방법에 적용하다.



<그림 1> 강아치교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강아치교"라 함은 주형을 곡선 또는 포물선으로 형성하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력을 받도록 하여, 양단에서 수평반력을 충분히 견디도록 힌지(또는 고정) 지점을 확고히 해서 수평변위가 없는 아치교량 형식중 강부재로 구성된 교량을 말한다. 강아치교는 120~370 미터의 범위 내에서 주로적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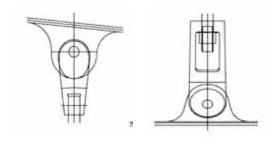




<그림 2> 아치교량의 구성

<그림 3> 아치 리브

- (나) "아치 리브(Rib)"라 함은 아치교의 주부재로 스팬드럴(Spandrel) 내의 수 직재 등으로 전달된 상판의 수직 하중을 압축력으로 부담하여 지반에 수 평력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말한다. 아치리브의 중심선을 아치축선이라 하고 아치축선의 정점을 크라운(Crown)이라고 한다. 또한 아치의 양끝 지점부를 스프링잉(Springing)이라 하며 이 스프링잉을 연결하는 직선과 아치 크라운부와의 연직거리를 아치 라이즈(Rise)라고 한다.
- (다) "행어(Hanger)"라 함은 아치교의 바닥판을 매달아 지지하는 연직 방향의 인장 구조재를 말한다.



<그림 4> 행어 끝단 연결부

- (라) "보강형(Tie Girder)"라 함은 상판지지의 주된 역할을 하는 보부재를 말하며 양 끝단에서 아치와 연결된다. Tie Girder 웨브에서 수직방향 Stiffner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가로보와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.
- (마) "벤트"라 함은 가설교량의 설치시 거더를 받치는 강재 동바리를 말한다.

C - 80 - 2013

- (바) "가로보(Cross Beam)"라 함은 메인 거더에 대해 가로방향으로 만들어진 보를 말한다. 교량의 바닥계(상판)에 있어서는 바닥보와 같은 작용을 하 며 철근콘크리트 보에서는 가로 방향의 안정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들어 진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 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강아치교 가설공법의 종류

- (1) 대블럭 가설공법은 공장 또는 현장에서 일체로 조립한 거더를 대형 운반기 계와 가설기계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가설하는 공법으로서 적용 및 특징 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대블럭 가설공법은 플로팅 크레인 또는 바지선이 가설지점에 진입 가능 한 곳에 주로 적용
  - (나)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가설 중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기간이 짧아 내풍, 내진 안전성이 높은 장점
  - (다) 최근에 장대 강아치교 특히 해상에 가설하는 경우에는 이 공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, 국내의 경우 백야대교, 저도연륙교, 통영대교, 서강대교 등의 가설에 본 공법이 적용되었음



<그림 5> F/C크레인 이용(백야대교) <그림 6> 크레인 일괄 가설



(2) 벤트공법은 가설공법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보강형 하부에 상부구조를

C - 80 - 2013

지지하는 벤트를 설치하여 보강형을 직접 지지하여 교량을 완성시키는 공법으로서 적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- (가) 형하고가 낮고 지반이 평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
- (나) 거더가 거의 응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설이 가능
- (다) 곡선교나 사교에서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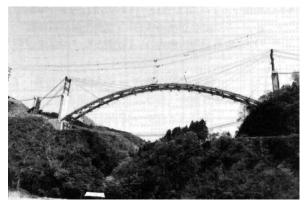
<그림 7> 벤트가설공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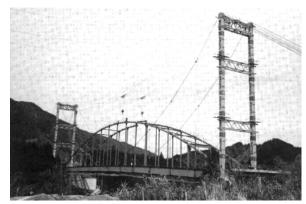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8> 회전공법(모암고가교)

- (3) 케이블공법은 수심이 깊은 하천, 벤트를 설치할 수 없는 계곡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법으로 양쪽 교대 또는 교각 위에 철탑을 세워 그 사이에 케이 블을 걸쳐 놓고, 이 케이블로부터 로프를 내려 단위부재를 매달아 가설하는 공법이다. 적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단위부재를 운반하거나 조립하기 위해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
- (나) 가설지점의 지형상 벤트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형하공간이 협소 한 경우 가능한 공법으로 국내에는 적용실적이 없음
- (다) 케이블 공법에는 경사매달기 방식과 수직매달기 방식이 있음
- (라) 경사매달기 방식은 아치리브를 케이블로 직접 지지하여 시공하는 방식
  - 동일한 지간에 대해 수직매달기 방식과 비교하여 가설재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부의 폐합조정을 위한 특별한 조정장치가 필요
- (마) 수직매달기 방식은 가설용 철탑사이에 현수선을 설치하고 현수선과 아치 리브를 행어로 연결하여 지지하여 가설하는 공법
  - 경사매달기와 비교하면 가설재는 약간 많이 드는 편이나 중앙의 폐합작업 은 경사매달기 공법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

C - 80 - 2013





<그림 9> 케이블방식 경사매달기 공법 <그림 10> 케이블방식 수직매달기 공법

- (4) 회전공법은 주로 가설 교량하부에 도로가 있고 교통통제가 불가능하여 벤 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공법으로서 적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케이블공법에 비해 가설이 쉽고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는 공법
  - (나) 교량 상부구조를 일괄 제작하여 한 지지점을 축으로 회전 이동시켜 거치 하며, 회전시 지지점의 변화가 없어 별도의 시공 단계별 구조 검토 없이 시공가능하다는 장점
  - (다) 경부고속전철상의 모암고가교에 이 공법이 적용되었음
- (5) 압출공법은 아치교 전체나 일부를 제작하여 윈치 등을 이용하여 교축방향 으로 압출시켜 거치하는 공법으로서 수상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압출방식과 보강형을 먼저 압출하고 압출완료 후 아치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.



<그림 11> 압출(회전)공법 : 바지선 <그림 12> 압출공법 : 트레일러 이용



### 5. 강아치교 상부구조(벤트가설공법) 시공순서

(1) 강아치교 상부구조(벤트가설공법)의 시공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.

- (가) 하부벤트 가설
- (나) 교량 거더와 가로보 등 보강형 가설
- (다) 상부 벤트 설치 및 아치리브 가설
- (라) 행어 가설 완료후 하부와 상부 벤트 제거
- (마) 슬래브 타설 및 포장 시공









<그림 13> 강아치교 시공 전경

시공계획서제출 1. 검토 및 승인 2. 지내력 검사	지조립장 조성	투입장비 1. 굴삭기 2. 덤프트럭
중점관리항목 부재진입로확보	자재반입	운송장비 츄레라 및 로베드
자재반입장소확보 1.8m×35m=2800m²	하역 및 소운반	하역장비 인양능력 검토 C/Crane 250ton
중점관리항목 1. 선형 및 전장검사 2. Camber량 확보 3. 접합부간격유지	Tie Girder 지상조립	사용공기구 1. Level 2. 광파기



<그림 14> 강아치교 상부구조(벤트가설공법)의 시공순서도

### 6.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사항

KOSHA GUIDE

(1) 공사현장의 제반여건과 설계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단계별 작업방법이 부합하고 공사용 장비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.

C - 80 - 2013

- (2) 작업계획서는 강아치교 작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립하여야 하며, 공사중에는 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본 공법에 사용되는 장비 및 가설 구조물 등은 반입해서 사용하기 전에 전 문가가 구조적 안전성 및 부재의 결함·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벤트의 설치, 이동, 해체작업 단계별 작업방법과 순서, 안전작업 매뉴얼, 근 로자와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.
- (5) 크레인을 사용하여 장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- (6) 시공자는 강아치교 시공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사전에 설계도서 등에 명 시된 안전관리 부분의 요구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.

# 7. 강아치교 안전작업

### 7.1 공통적인 안전조치사항

- (1) 작업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가)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(나) 근로자를 배치할 때는 작업환경, 작업종류·형태·내용·기간 등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  - (다) 근로자 연령, 건강상태, 업무경력, 경험정도 등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작업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(라) 특히 강아치교 리브 조립 작업은 고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고소공 포증, 고령자, 고혈압 질환자 등은 배제시켜야 한다.
  - (마) 해상작업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, 구명로프, 구명튜브 등 구호장

C - 80 - 2013

비를 갖추어야 한다.

- (바)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사) 안전모, 안전대, 구명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 전에 보호구의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작업 중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
- (2) 사용예정 가설장비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적인 장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.
- (3) 위험기계·기구의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장 내 고압 송전선로, 전기·통신케이블 등 장해물 현황을 사전에 조사 하여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개구부나 외주부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추락방지망 등 떨어짐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,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떨어짐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시작 전에 작업통로,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장 내 공구 및 자재를 정리정돈하여 맞음·비래 등의 재해를 예방하여 야 한다.
- (8) 벤트, 강아치교에 사용되는 부재의 재질 및 용접상태, 볼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9) 중량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부재에 인양용 러그(Lug)를 설치
- (나)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부재의 2지점 이상에 결속

C - 80 - 2013

- (다) 별도의 유도 로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유도
- (라) 부재 인양 시 신호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배치 및 신호체계 수립
- (마) 중량물 부품을 운반하여 임시 적재할 때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이고 균형을 잡은 후 적재
- (10) 비·눈·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 특히, 순간풍속이 초당 1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·수리·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, 순간풍속이 초당 2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11)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보통작업(150럭스 이상), 초정밀 및 정밀작업을 제외한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, 특히 야간 작업을 위하여 투광등과 같은 충분한 조명시설을 확보하고 감전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(12) 그 밖의 떨어짐, 맞음·비래, 강풍·강우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철골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CODE C-8-2009)에 따른다.
- (13) 수상작업 시에는 수상작업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, 구명로프, 구명튜브 등 구호장비를 갖추어야 하고, 해상 안전작업 사항 등에 대한 공통적인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(KOSHA GUIDE C-2-2012)에 따른다.

### 7.2 지상 조립장 조성 및 자재반입 시 안전조치사항

- (1) 지상 조립장 조성 시에는 안전작업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(가) 굴삭기,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재해예방계획
  - (나) 작업장 크기 : 폭. 길이
  - (다) 배수대책: 가설흄관의 직경, 길이, 설치방법
  - (라) 환경대책: 오탁방지망, 오일휀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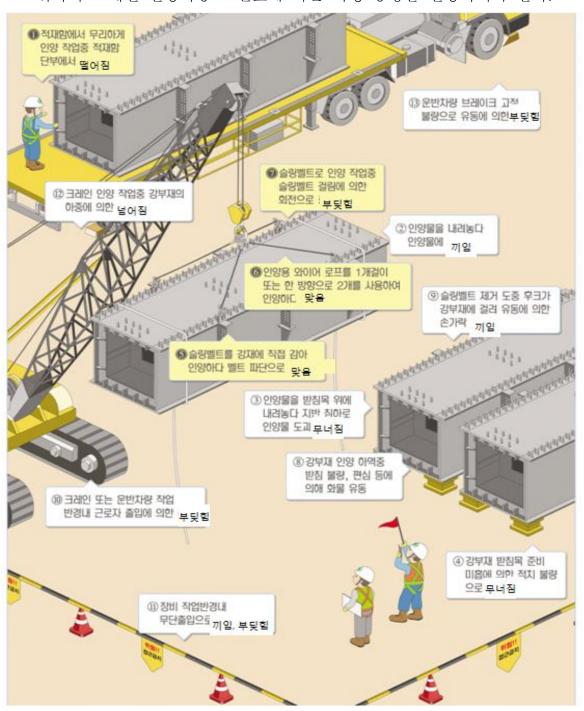
C - 80 - 2013

- (마) 지내력 및 검사
- (2) 자재반입 시에는 트레일러 및 로베드의 넘어짐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
- (가) 자재반입 시 위험요소
  - 주행로 협소로 운반도중 작업차량과 부딪힘
  - 운반차량의 적재용량 초과운행으로 타이어 펑크 등에 의한 도괴
  - 차량 운반중 적재함의 결속선 파단으로 맞음
- (나) 사전에 부재 진입로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
- (다) 도로폭의 유지, 경사도, 부동침하의 방지, 갓길의 무너짐 방지, 유도자 배 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
  - 지정구간 내 제한속도 규정 및 지정속도 운행준수
  - 제한속도 유지 및 커브길 감속운전
  - 커브길 볼록반사경 설치
  - 차량 운반 전 주행로 사전점검 및 유지 · 보수
- (라) 적절한 자재 반입장소 확보
  - 적재기간동안 타공종과 간섭되지 않은 장소
  - 바닥이 중량물에 버틸 수 있는 구조
- (마) 하역장비 인양 능력 검토

# 7.3 하역, 소운반, 보강형(Tie Girder) 지상 조립작업 시 안전조치사항

- (1) 적재함에서 무리하게 인양작업 중 적재함 단부에서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재함에서 인양작업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2) 인양물 하역 시에는 인양물에 의한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 및 근로자 위치는 크레인 운전자의 시야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(3) 인양물을 받침목 위에 하역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인양물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는 화물적재 장소의 지반 견고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(4) 강부재 받침목 준비 미흡에 의한 적치불량으로 인하여 무너짐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자재하역 전 하역장소의 평탄성을 확인하고 받침목 설치상태 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크레인 인양작업 중 강부재의 하중에 의한 크레인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크레인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른 적정 중량을 인양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5> 하역, 소운반, Tie Girder 지상조립 작업시 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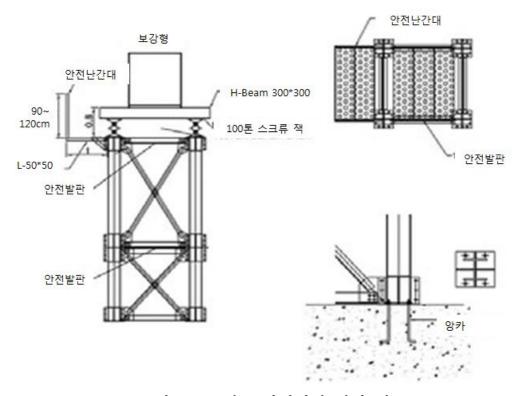
C - 80 - 2013

- (6) 운반 차량 브레이크 고정 불량으로 유동에 의한 부딪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반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 확인 및 비탈면에서 바퀴에 구름방지용 쐐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슬링벨트로 강재를 감을 때 강재모서리와 로프 접촉부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2줄 걸이로 결속하고 인양하여야 한다.
- (9) 인양물 하역작업시에는 일단정지 후 인양물 받침상태 등을 확인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10) 강부재 적재시 슬링벨트의 물림이나 후크가 부재 틈에 걸리지 않도록 받침목의 위치와 높이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11) 강부재의 인양 및 하역 작업시 유도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7.4 벤트 설치 시 안전조치사항

- (1) 벤트 설치공사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벤트의 침하, 넘어짐, 무너짐
  - (나) 벤트 설치 시 벤트 인양 크레인의 넘어짐
  - (다) 벤트 설치 및 해체시 근로자 떨어짐
  - (라) 하부 벤트의 사하중 처짐으로 가로보를 삽입할 수가 없어 잭으로 벤트를 들어올린 후 가로보를 삽입하려다가 잭이 편심을 받아 튕겨 나오면서 근로자 안면부 강타 사고
- (2) 벤트 설치공사 시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(가) 구조검토 실시
- (나) 벤트 위치의 지반 지지력 확인

- C 80 2013
- (3) 벤트는 작업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의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.
- (4) 벤트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균열, 부식, 휨, 단면부족 등의 결함이 있는 자재는 반출시켜야 한다.
- (5) 벤트의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지반은 다짐을 실시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하여야 한다.
- (6) 벤트 기초가 경사진 경우에는 벤트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7) 벤트가 최종적으로 조립 설치된 경우에는 위치 레벨 및 볼트의 체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8) 벤트 작업대 단부에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 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난간 하부에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발 끝막이판(Toe Board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6> 벤트 안전시설 설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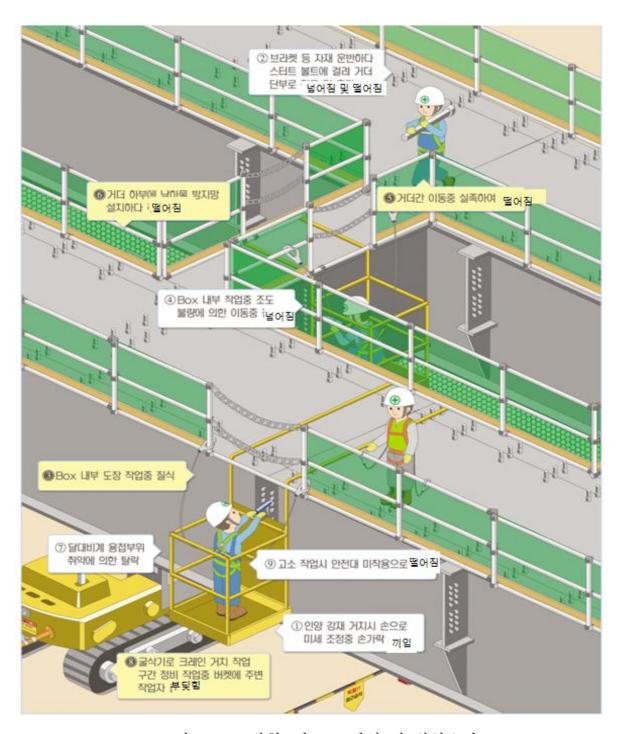
C - 80 - 2013

- (9) 작업시작 전에 작업통로,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0) 벤트 설치작업중 작업용 잭(Jack)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에 맞는 잭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 7.5 보강형, 아치 리브 조립 시 안전조치사항

- (1) 강부재 인양 시작 전에는 작업방법, 순서, 안전조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가) 작업 인원수와 근로자 건강상태
- (나) 작업 신호와 통신시설 상태
- (다) 용접기, 가스공구, 휴대공구의 상태
- (라) 고소작업용 안전대, 용접 보호면, 차광안경과 같은 개인보호구 상태
- (마) 낙하물 방지망, 추락 방지망, 안전난간 등과 같은 가시설 설치상태
- (바) 양중장비의 양중능력을 고려하고 정격속도를 준수
- (사)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 거나 주변에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등 위험 방지조치를 실시
- (2) 보강형, 가로보 볼트체결 및 조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보강형, 가로보 볼트체결 및 조립공사 중 위험요소 파악
  - 보강형 및 가로보를 이동대차(Roller)에 인양·운반 시 근로자 부딪힘, 끼임, 떨어짐
  - 보강형 및 가로보를 교각 위에 안착 시 근로자 끼임
  - 인양강재 거치 시 손으로 미세조정 중 손가락 끼임
  - 브라켓 등 자재를 운반하다 스터트 볼트에 걸려 거더 단부로 넘어짐 및 떨어짐
  - 박스 내부도장 작업 중 질식
  - 박스 내부작업 중 조도불량에 의한 이동중 넘어짐
  - 거더 간 이동 중 실족하여 떨어짐
  - 거더하부에 낙하물방지망 설치하다 떨어짐

- 달대비계 용접부위 취약에 의한 무너짐
- 굴삭기로 크레인 거치작업 구간의 지반 정비작업 중 버켓에 주변 근로자 부딪힘
-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떨어짐



<그림 17> 보강형, 가로보 작업 시 위험요인

- (나) 크레인 위치의 지반 확인 철저
- (다) 양중 크레인 인양 능력 검토
- (라) 샤클 및 와이어로프 확인
- (마) 신호수 배치
- (바)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고소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
- (사) 거더상부에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하고 거더단부에 안전 난간설치
- (아) 보강형 및 가로보 간의 이동통로 설치 및 안전난간 설치
- (자) 낙하물 방지망을 지상조립 후 인양거치
- (차) 달대비계는 견고하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하여 작업실시
- (카) 유도자 배치하고 장비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
- (타)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설비 설치 및 방독마스크,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 구 지급 착용
- (파) 작업장 주위에 조명등 설치 또는 휴대용 조명 기구 지급
- (하) 통로 주변은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의 양중기 작업반경내에 자재 야적장을 별도로 확보
- (3) 아치 리브와 행어 조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아치 리브와 행어 조립공사 중 위험요소
  - 인양용 와이어로프 손상에 의한 파단
  - 사다리 이용 강부재 위로 오르다 사다리 넘어짐
  -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에 의해 인양작업 중 무너짐
  - 작업장 내 지반지지력 미검토에 의한 무너짐
  - 크레인 작업 시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로 장비 넘어짐
  - 크레인 지브의 경사각 미준수로 장비 넘어짐
  - 후진이동시 후방의 근로자 또는 유도자 미확인에 의한 부딪힘
  - 크레인의 후크해지장치 미부착으로 떨어짐
- (나) 단부 떨어짐 방지 및 자재적치 관련
  - 추락방지용 방망은 강부재 하부 플랜지에 강재용 클램프를 이용한 달비계 설치 후 방망을 인양하여 설치
  - 떨어짐 방지용 수평구명줄은 견고하게 처짐없이 설치
  - 통상적으로 교량공사는 산간, 하상, 해상에서 이루어져 강풍에 대비한 자 재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리정돈 및 묶음(다발)으로 보관

C - 80 - 2013

### (다) 아치 리브 달비계 설치 관련

- 아치 리브, 보강형, 가로보 상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떨어짐 재해예방(가 능한 한 근원적인 위험을 예방토록 지상에서 조립하여 인양)
- 바스켓 크레인(Basket Crane)을 이용하더라도 탑승설비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, 안전대 착용 및 고정
- 위험장소에 최대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태도 교육 철저
- 거치 전 공사관계자와 안전관계자 합동으로 안전시공계획 수립, 검토

### (라) 하부 떨어짐 방지조치 관련

- 성능검정에 합격한 추락 방지망 설치(그물코가 2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낙하물 방지망으로 사용 가능)
- 테두리 로프를 체결하여 지점부 강도 확보
- 교량하부와 주변도로의 경계선을 따라 휀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

### (마) 달대비계 설치상태 관련

- 달대비계의 발판 상부에는 낙하물 발생 방지를 위해 방망이나 그레이팅망 설치
- 달대비계는 이탈되지 않도록 거치
- 달대비계상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, 부착
- 상부 플랜지 상의 드리프트 핀(Drift Pin)은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관리
- 달대비계에 강아치교 상면에서 1미터 이상 높이까지 손잡이용 부재를 설 치하여 달대비계로 승·하강 시 손으로 잡도록 교육 실시

### (바) 브라켓 및 단부 안전난간 설치상태 관련

- 난간 지주의 유동을 막기 위해 클램프형으로 보강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
- 슬래브 측면에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및 타설 직후의 통로,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, 거푸집 해체를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발 판 및 안전난간을 함께 설치
- (사) 인양방법 순서, 신호체계 등 인양작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안전작업 절차 관련
  - 양중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및 크레인 인양하중 조견표의 경사각 준수
  - 작업장 내 중량물 취급장비의 이동, 작업 시 지반침하에 대한 검토 및 대 책 수립
  - 인양용 와이어로프는 작업 전 점검실시
  - 사다리 넘어짐 방지 조치 실시
  - 크레인 방호장치 및 작동여부 확인

- 작업차량 이동경로 확보, 위험지역 순차 교행 등 교행확보 방안 마련
- 후진작업 시 유도자의 유도에 의해 작업 및 유도자는 운전자의 인식가능 한 장소에서 유도
- 크레인의 후크해지장치 부착
- 샤클 및 와이어 확인
-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고소작업 시 안전규칙 준수
- (4)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·해체 등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넓이와 지내력이 확보된 작업장을 조성하 여야 한다.
- (5)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,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
- (나)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 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(또는 보관고)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 반할 것
- (다)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
- (라)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
- (마)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
- (6) 크레인의 조립 및 해체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치·해체 지침을 따르고, 기타 사항은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48-2012) 에 따른다.